

법무법인 새빛

CONTENTS

새빛소식

1. 새빛소식
 2. 최근 승소사례
 3. 영입인사
-

최근 주요 판례 및 개정법령

1. 최근 주요 판례
 2. 주요 개정 법령
-

새빛이 추천하는 이달의 책

9월의 도서 – 지식인의서재, 한정원 저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1.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2. 행복이란? (유영만 교수 강연소감문) 박창우변호사
 3. 다섯번째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

부여 백제문화 탐방기

1. “일본에 남은 한국미술”을 읽고 – 송무팀 최진욱 과장
2. 부여 백제문화 탐방

SEBIT INTRODUCTION

새빛소식

▶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개최 | “곡선이 이긴다” 저자 유명만교수

법무법인 새빛은 2011년 8월 17일 오전 10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곡선이 이긴다”의 저자 유명만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를 모시고 “행복”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 법무법인 새빛 사무소 이전

법무법인 새빛은 2011년 9월 4일 고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역삼동 포스코 P&S빌딩 18층으로 법인사무소를 이전하였습니다.



▶ 새빛지행 발간

법무법인 새빛은 기존의 법률서비스와 차원이 다른 명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구성원 스스로가 먼저 유능하고 바르며, 친절하고 겸손해야 하며, 나아가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빛의 구성원들은 매월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함께 읽으면서 구성원의 내적 발전을 지향함과 더불어 고객과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원들의 노력을 반영하여 이번에 “새빛지행”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새빛지행”은 지난 1년간 새빛의 구성원들이 매월 선정된 추천도서를 읽은 후 작성한 각자의 감상평과 새빛 구성원의 자기소개 등을 담은 소책자로서, 앞으로 구성원들의 노력과 나아가 혁신의 마음으로 도전하는 새빛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 매년 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 일월펀드 조성

법무법인 새빛은 책임지는 시민으로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전 직원이 매달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일월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월펀드를 통하여 조성된 금액은 재년에 처한 이웃, 꿈을 위해 노력하는 새빛장학생, 품격 있는 국가건설에 이바지하는 역사가와 예술가에 대한 지원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새빛 장학금 전달

법무법인 새빛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꿈의 실현을 도와주고자 2007년부터 소외 지역학교에 새빛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관중학교, 수유중학교, 수서중학교, 수명고등학교 등에 총 17명의 학생에게 매 학기 50만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빛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성장의 기쁨을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위하여 나누겠습니다.

▶ 수해피해지역 이주민 구호자금 기탁

법무법인 새빛은 연초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구촌가족을 위하여 기부금을 기탁한 것에 이어 지난 7월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수해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를 통하여 360만원의 이주민 구호자금을 기탁하였습니다.

▶ 새빛 구성원 소식

박창우, 손지성 변호사 득녀

박창우 변호사는 2011. 7. 4 건강하고 예쁜 둘째 딸(박리예)을, 손지성 변호사는 2011. 7. 27 건강하고 예쁜 첫째 딸(손은빈)을 얻은 후, 3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사히 마치고 새빛에 복귀하였습니다.

새빛은 “출산은 남녀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아래 3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2

최근 승소사례

2010구합2923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

사실관계

서울시는 1979. 7. 23. 원고들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대상토지일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자동차정류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회사는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구역을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1차 사업에 대하여는 1980. 6. 4. 사업시행허가를 취득한 후 1980. 12. 29. 시행 허가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30년간이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화물터미널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5년경 3차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기간 변경인가 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지에 포함하여 2009년경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피고 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위원회가 2009. 10.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09. 12. 4. 로 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자, 원고들은 피고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고 사업시행자가 30년 동안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재산권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왔으므로 해당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일부 증액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은 유효한 사업인정에 의한 수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빛의 주장 및 1심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새빛은 하나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각 실시계획은 당해 분할된 개별 사업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시계획에 의한 수용권도 당해 사업지구에만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토지를 사업구역에 포함시킨 1차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는 피고회사가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실효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수용권 확보만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3차 사업시행지에 포함시키는 실시계획변경 인가는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피고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 또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해당주장을 받아들여 해당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03

영입인사

법무법인 새빛은 금융중심 컨설팅펌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업력을 다져온 투자금융전문인력을 영입하였습니다.



▶ 안재영 대표전문위원 영입

- 1988 홍익대학교 졸업
- 1999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 1988. 4 ~ 2011. 1 삼일회계법인 PwC Senior Partner



▶ 서철원 파트너 변호사 영입

- 1986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8 한국합동 법률사무소 구성원변호사
- 1999 법무법인 동양 대표변호사
- 2000 한빛은행 준법감시부 초대 상임고문변호사
- 2007 우리은행 준법지원부 법무팀 수석변호사



▶ 김근우 호주변호사 영입

- 2004 호주 University of Sydney 졸업 (B.Com LLB)
- 2005 호주변호사 자격취득
- 2006 National Australia Bank
- 2009 삼일회계법인 PwC



▶ 조은결 변호사 영입

- 2008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8 제50회 사법시험합격,
- 2011 제40기 사법연수원수료



▶ **김경환 회계사 영입**

- 2000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 2000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2009 LONDON BUSINESS SCHOOL Masters in Finance (MIF) 석사
- 2000 삼일회계법인 PwC
- 2004 MONITOR GROUP
- 2008 MACQUARIE
- 2009 Gordon Brothers Group, London UK
- 2010 Woongjin Capital PE



▶ **황은숙 회계사 영입**

- 2000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2000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2000 삼일회계법인 PwC
- 2008 회계법인리안



▶ **최진석 회계사 영입**

- 2002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B.A in Economics
- 2002 USCPA (State of Delaware)
- 2004 삼일회계법인 PwC
- 2010 (주)두산 Financial Analysis팀



▶ **차민철 회계사 영입**

- 2005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05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2005 삼일회계법인 PwC
- 2008 EC English Language School, Business Course 수료 (London, UK 2008)
- 2010 (주)삼성메디슨



▶ **강예진 회계사 영입**

- 2004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06 연세대학교 경영학 대학원 졸업
- 2006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2006 삼일회계법인 PwC
- 2010 University of Pennsylvania ELP IP/BIP 수료

최근 주요 판례 및 개정 법령

Leading case & revision legislation

04

최근 주요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행사와 고발불가분의 원칙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판결

판결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제66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그 소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위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고발을 한 경우에 그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도 제233조에서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에 대하여 그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추 요건이라는 성질상의 공통점 외에 그 고소·고발의 주체와 제도적 취지 등이 상이함에도,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 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소추 요건의 결여로 그 공소의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05

최근 개정 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6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

개정이유

최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불법적인 방법 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과 국외 인수·합병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간접적으로 이전 받으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산업기술을 둘러싼 보호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차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을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로 한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현행 법령에서 지정·고시·공고·인증한 산업기술뿐만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기술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현행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일반안건을 제외함으로써 위원회가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등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에 집중하도록 그 기능 및 권한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안 제7조).

다.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국외 인수·합병 등을 하려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라. 산업기술의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업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직권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조제2항).

- 위 내용은 법제처 “최근 공포법령” 을 참고한 것입니다.

새빛이 추천하는 이달의 책

Recommend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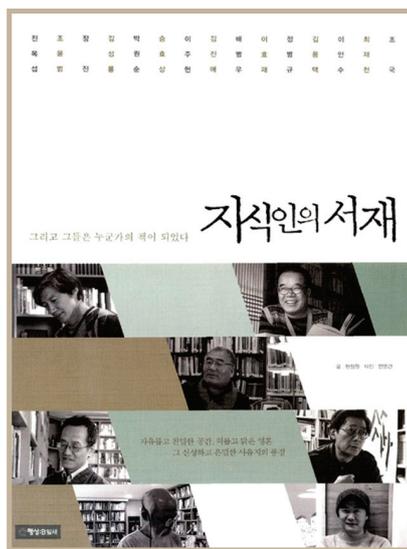
9월의 도서 – 지식인의서재, 한정원 저

새빛의 전 구성원들이 매월 책을 읽고 감상평을 써온지 1년 9개월째이다. 글로 써보는 행위 이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에 관해 깨닫는 과정이 있을까?

고객들께서 왜 법무법인에서 그런 것까지 행하냐고.. 이유를 묻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새빛의 구성원은 유능하고 바르고 친절하고 겸손해야 하며, 모든 정확한 솔루션은 오직 정공법입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설계하기 이전에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천도서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자세를 낮추어 감사하며 열린 마음과 자세를 끈질기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부족하고 메마른 현실과 상황에 불평하기보단 자신의 참여로 창조될 미래와 비전에 인생을 걸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새빛이라는 특별한 조직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유일한 변화의 묘책은 책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을 찾기 위한 정직한 노력입니다.”

9월의 추천도서 ‘지식인의 서재’ ... 조국, 최재천, 이안수, 김용택, 정병규, 이효재, 배병우, 김진애, 이주현, 박원순, 승효상, 김성룡, 장진, 조윤범, 진옥섭 등 책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최고의 책쟁이, 글쟁이, 직업인, 그리고 혁명가들의 삶을 대하곤 모한 부러움이 든다. 이 책에 소개된 지성인들의 수준에 근접할 만큼으로 창조하고 혁신하는 새빛인이 완성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날에 “새빛인의 서재”란 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매를 맞아 확실히 번 돈 2천원으로 8백원짜리 무협지 2권을 편지로 주문했던 진옥섭 선생의 일화에 눈물지을 줄 아는 순수지성의 지식인이 새빛에서 많이 배출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아라비아 속담으로 소개된 이 구절, 우리 스스로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모르면서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 바보니까 피해라. 자기가 모르면서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단순하니까 가르쳐주어라. 알면서 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고 있으니 깨워라. 알면서 안다는 사실도 아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니 따르라.”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Educated Person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연혁

법무법인 새빛은 차원이 다른 고객중심의 명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달에 한 번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들을 모시고 고객과 사회에 대한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세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 제1회 2월 고 영 (SCG (대표),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이사) “나비의 꿈” 저자)
- 제2회 4월 김승남 (주식회사 조은시스템 회장 “좋은성공” 저자)
- 제3회 6월 신봉승 (“문묘 18현”, “국가란 무엇인가” 저자)
- 제4회 8월 유명만 (지식생태학자, 한양대학교 교수, “곡선이 이긴다” 저자)

행복이란? (유명만 교수의 강의를 듣고) - 박창우변호사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를 물어본다면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답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럼 당신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면 각자의 가치관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대답은 아주 다양할 것이다. 아픈 사람은 건강이 행복을 준다고 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나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가 행복을 준다고 할 것이며, 권력이나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가 행복을 준다고 할 것이다. 그럼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지식생태학자로 유명하신 유명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님의 오늘 강연을 듣기 전에 읽었던 교수님의 “곡선이 이긴다” 라는 책은 사실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을 나에게 주지는 아니하였다. 오히려 책을 읽으며 과연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지에 대한 고민만을 더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금의 해답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에 교수님의 강연이 더욱 기대되고 기다려졌다.

교수님의 강연은 “공·개·사과”에 대한 유쾌한 에피소드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파리학과 학·석·박사, 교수의 차이점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며 보여주신 “흠친 수건” 사진 등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운 강연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약간은 섬뜩하였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날며 빠르게 늙어서 무덤의 관 속에 떨어지는 동영상까지 교수님의 강연은 시간이 가는 걸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과 동시에 작은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다.

교수님이 비유법으로 말씀하신,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탄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럼에도” 섬의 “들이대학교저질러 학과의 뒷수습전공” 의 학생처럼 본인이 주목 받거나 화려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사람, 더 나아가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행복해 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점!



다섯번째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새빛은 10월 12일 오전 7시 30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려” 의 저자 김진명 작가를 모시고 다섯번째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은 고객 여러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오니, 포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포럼 일시 : 2011년 10월 12일(수) 오전 7시 30분
- 강 사 : 김진명 작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려” 저자)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3 포스코P&S 타워 3층 이벤트를
- 강연주제 : 우리나라 국호 韓의 비밀

부여 백제문화 탐방기

Culture travel journal

“일본에 남은 한국미술” 을 읽고 - 송무팀 최진욱 과장

제3자의 자리에서 남의 것을 평가하고 그 느낌을 솔직히 우려내려 한 한 외국인 학자의 우리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며 한 사람으로서 진실된 삶의 자세를 배워보았다.

존 카터고벨이라는 동양 미술사학자로서의 열정과 인류의 한 시대를 살다간 인간적 표현들로 우리 것에 대해 마음껏 쏟아 담은 글들로 이뤄진 이 책은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독자들이라면 한번 찾아봄에 머뭇거리릴 이유가 전혀 없는 소중한 책이다.

(본문 77페이지 인용.)

사리함을 안치한 방식도 한국 절의 그것과 똑같다. 결국 백제장인들은 백제에서 하던 방식을 일본에서도 똑같이 한 것이다. 호류지 5층탑 심주 밑에 안치된 사리함은 먼저 조그만 유리병에 사리를 담고, 이를 금으로 된 함에 넣은 다음 다시 은으로 된 함에 넣고 그 다음엔 동으로 된 함에 넣은 뒤 마지막으로 커다란 항아리에 넣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심주 밑 초석에 장치된 사리공에 안치되고 흙이 들어가지 않게 동판으로 사리공을 덮었다.

사리함이 장치되는 순서는 한국 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포갠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굴된 사리함도 이와 같은 순서를 따른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넝쿨 속에 있는 사냥꾼을 새겨 넣은 동경이 함께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호류지는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 애썼던 쇼토쿠 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이며 일본 왕실과도 긴밀한 유대를 맺어온 절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01

부여 백제문화 탐방

제57회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그곳 부여에서는 문화제 준비가 한창이었다.
 2011. 10. 1. 부터 10. 9.까지 공주와 부여일대에서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 지금보다는 행사기간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두 딸, 그리고 아내.. 우리 한 가족 모두 부여에 다녀왔다.
 오랜만에 떠나는 나들이여서 가족들 모두 들떠있었고, 드라이브 하는 기분만으로 최고였다.
 날씨도 너무 좋아서 그곳에 위치해있던 하나하나의 문화유적이나 유물들이 그 의미를 더해주었다.

- 안내사이트 : <http://www.baekje.org/html/kr/index.html>

02

들러본 곳

부여에는 그곳만의 분위기가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여러 곳곳에 위치해있어 한 곳을 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둘러봐야 한다. 서울에서 자가용으로 부여C까지 이동한 후 부여C에서 부여 시내까지 금방 도착할 수 있다.



부여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시내에 도착하면 부여시내전체가 모두 유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여IC에서 빠져나와 먼저 도착한 곳, 부여정림사지5층석탑.

정림사라는 절터에 현존하는 석탑중에 가장 오래된 백제시대의 석탑인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국보 제9호, 높이 8.33m)과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높이 5.62m의 석불인 부여정림사지석불좌상(보물 제108호)이 남아 있으며,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계속 법통이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서동공원, 공남지

부여군 동남리, 부여읍 중심에서 남쪽으로 약 1km떨어진 백제시대의 연못으로 사적 제135호, 면적 45,527㎡에 달한다. 백제 무왕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궁궐의 남쪽에 연못을 팠다' 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근거로 공남지라 불리었다고 한다.

1500 여 년전에 만들어진 연못. 연못 입구부터 많은 수련화들이 나를 반겨주었고, 연못 주위로 심어져 있는 버드나무들이 연못의 아름다움을 더해주었다



03

가볼만한 곳

사진에 담지는 못했지만 위에 소개된 곳 말고도 가볼만한 몇 곳을 소개해 본다. 먼저, 부여시내 지도를 보고 아래와 같은 코스로 구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소산성과 낙화암, 고란사

1984년 5월 17일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110호로 지정되었다. 서기 660년(백제 의자왕 20)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침공으로 함락되자 궁녀 3,000여 명이 백마강(白馬江) 바위 위에서 투신하여 죽었다고 한다. 그 바위를 사람들이 낙화암이라고 불렀는데, 이 암석 위에 1929년 다시 그곳 군수 흥한표가 백화정을 지었고, 절벽 아래에는 '낙화암(落花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새빛 러브레터는 새빛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편집부에서는 24시간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가슴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땐 나에게만 의미가 되어준 글이지만, 이곳에 글을 보내주시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원고마감 : 어느 때고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원고종류

1. 살아가는 이야기
1000자 정도(일기, 수필, 편지 등/ 필자 사진 프로필)
2. 추억의 사진
사진과 간단한 사진이야기(사진보낸 이의 프로필)
3. 향기나는 이야기
- 세상을 살아가며 겪었던 훈훈한 인정. 삶을 되돌아 보게 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글이면 좋습니다.
4. 짧은 글 긴 감동
- 짧지만 감동을 주는 체험담. 생활속에서 느꼈던 작은 감동을 글로 써 보내면 됩니다.
5매 수필, 손바닥 에세이도 좋습니다.
5. 기타 알리고 싶은 소식 및 광고, 혼자만 감상하기 아까운 시, 수필 등의 작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새빛 러브레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성미경변호사(mksung@sebitlaw.com) 유명산 팀장(msryu@sebitlaw.com)

공중 인가 법무법인 새빛

새빛의 법률서비스는 고객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빛의 전문가는 유능하고 바릅니다.

새빛의 직원은 친절하고 겸손합니다.

새빛인은 혁신의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www.sebitlaw.com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3 포스코 P&S타워 18층
TEL 02 3448 0030 FAX 02 3445 5533

논현 분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5층
TEL 02 565 7188 FAX 02 542 7186

포항 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46-5 3층
TEL 054 242 3700 FAX 054 242 3702